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49호 2014. 8. 4.(월)

공 고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14-596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2
- 사천시 공고 제2014-597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4
- 사천시 공고 제2014-598호 사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6
- 사천시 공고 제2014-599호 사천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7
- 사천시 공고 제2014-600호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8
- 사천시 공고 제2014-601호 사천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9
- 사천시 공고 제2014-60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0
- 사천시 공고 제2014-60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2)

공 고 (입법예고)

사천시 공고 제2014 - 596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와 외부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요 소송사건을 규정함(안 제3조)

-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제기된 소송
-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다. 경미한 소송사건을 규정함(안 제4조)

-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
- 도로 및 하천 등 영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4)

사천시 공고 제2014 - 597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나. 법률고문 변호사 정수 및 위촉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 2명 이내 선임, 법무법인도 가능함

○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임명토록 함

○ 고문변호사 위촉 전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징계내역을 열람토록 함

다. 고문변호사 임기를 규정함(안 제3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라.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대리 현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5)

마.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소송심의위원회 신설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 소송사건 응소방안 및 대책 등 협의
-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6)

사천시 공고 제2014 - 598호

사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순화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의 약칭을 정의조항에서 사용(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기타 → 그 밖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7)

사천시 공고 제2014 - 599호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순화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명칭의 약칭 생략(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8조)

○ 제명에 지자체 명칭을 기재 : 해당 지자체에서만 유효함을 선언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 기타 → 그 밖에

○ 이중 표기 정비 : 미리 사전 협의 → 미리 협의, 매 소송마다 → 소송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8)

사천시 공고 제2014 - 600호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순화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명칭의 약칭 생략(안 제1조)

○ 제명에 지자체 명칭을 기재 : 해당 지자체에서만 유효함을 선언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인 → 명, 자 → 사람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범위내 → 범위
-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9)

사천시 공고 제2014 - 601호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범위내→ 범위, 50%→ 50퍼센트, 1인→1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10)

사천시 공고 제2014 - 60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소송심의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기능을 추가함(안 제3조)
 -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심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11)

사천시 공고 제2014 - 605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반영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하도록 개정함(안 제9조제5호)
- 나.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내용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 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6항)
-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완화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1)
- 마.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개정함(안 제19조)
- 바. 설계도서의 작성에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 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는 시설 기준을 완화함(안 제38조제2항)
- 아. 건축협회의 적용 대상 구역 및 협정서 체결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신설함(안 제38조의3)

사 천 시 공 보

제 349호 (1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22, FAX : 831-6034)